

퇴직자 설립회사에서 유사상호 등기 및 경쟁영업활동 - 선발회사에서 일부업종 폐업신고  
상황에서 상호사용금지 및 등기말소청구 인정 BUT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전주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합1670 판결



상법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营业을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1. 사안의 개요

- (1) 원고회사 전주시에서 30여년 소방설비 공사업, 소방시설 관리유지업 영업, 2018년 말 경 소방시설 관리업 폐업신고
- (2) 원고의 직원들 퇴사 후 피고회사 소방시설 관리업, 공사업 목적으로 설립 및 유사 상호 등기함
- (3) 유사상호 사용금지 청구 및 상호등기말소 청구

## 2. 법원의 판단요지 - 상호사용 금지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명령 BUT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1.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B'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8. 12. 5. 등기번호 013136호로 마친 상호 중 'B'에 관한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판결이유

피고가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 또는 소방 시설 관리업과 관련된 거래자가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개연성이 높아 일반인 또는 관련 거래자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 또는 관련 거래자로 하여금 자기의营业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원고의 상호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상호의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의 설립 무렵인 2018. 12. 초경 자신의 주된 사업목적 중 하나인 소방시설 관리업에 관하여 폐업하거나 더 이상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점, 소방시설 공사업은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관리업 등과 연계하여 체결되는 것으로 보여 그 공사업 자체만으로 실질적인 영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상호 사용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기존에 영위하던 소방시설 공사업의 매출액 등이 실제로 감소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자료나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재 주장하는 구체적인 손해액이 피고의 위법한 이 사건 상호 사용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첨부: 전주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합1670 판결

지재권분쟁, 침해대응/감정,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One-Stop 대응, A~Z 수행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